일제가 조작한 《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

리성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33폐지)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저들의 통치체제와 식민지통치질서를 반대하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한 파쑈악법으로서 여러번 개악되여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말살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왔다.

《치안유지법》의 첫번째 개악판인《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죄행을 미화분식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폭로하는데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 조작실시된 후에도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자 일제는 그것을 조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28년에 그 법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였다. 이 법을 일명 《신치안유지법》이라고 부른다.

《신치안유지법》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에 세워진 통치제도와 사적소유제도를 유지옹호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더욱 철저히 탄압말살하기 위한 파쑈폭압수단이였다.

《신치안유지법》은 앞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에 비하여 볼 때 그 내용에서 극히 반동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여있었다.

《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일본군주를 우두머리로 하는 반인민적인 통치제도를 더욱 절대화하였다는데 있다.

낡고 뒤떨어진것을 보존하려는것은 반동세력의 본성이며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일제 역시 허물어져가는 저들의 정치적지배체제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 최후발악하였다.

당시 일본의 통치제도는 왕을 신적존재로 내세우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해나가 려는 부르죠아지들의 요구에 따라 왕에게 절대적권력을 부여한 제도였다.

일제는 일본이 왕의 《조상신》과 그 후손이 대대로 통치하게 되여있는 군주제국가이고 《신국》이라는것과 왕을 신성불가침한것으로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황도정신》배양, 봉건 유교도덕을 인민들에게 설교하여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일본인민들을 왕과 군국주의정책실현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신봉자, 추종자로 키워 반동적인 군주통치에 굴종시키며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마당에 돌격대로, 총알받이로 순순히 내몰기 위한 교활한 정치적의도의 반영이였다.

1925년《치안유지법》에서는《국체》보존과《사유재산제도》옹호에 대한 내용이 한개의 조 문속에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병존하고있었다. 이 조문을 보면 당시 일제가 왕의 절대주 의통치제도와 사적소유제도중에서 어느 하나를 중시한것이 아니라 다같이 중시하였으며 그 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려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일제는 점차 정치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 일본인민들의 투쟁과 혁명력량의 강화에 당황망조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한 수습책을 강구하게 되였다.

일제는 《신치안유지법》에서 왕의 절대주의통치제도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적소유제도

를 침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시함으로써 원래의 균형관계를 깨뜨리고 《국체》의 고수를 첫 자리에 내세우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일제는 제1조에 두개의 항을 첨가하고 제1항에서 《국체를 변혁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조직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조직관계를 별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체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결사를 조직한자나 그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자에게는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것으로 하고 후자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자에게는 종래와 같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벌상에서도 큰 차이를 두었다.

이것은 일제가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왕의 절대주의통치제도를 고수하는것을 저들의 첫째가는 목적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통하여 일본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억 압을 강화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겠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였다.

《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보다 더 가혹한 형벌종류를 규정하고 이미 있던 형벌의 도수를 보다 더 높였다는데 있다.

착취자국가의 형벌은 례외없이 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진압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수단이다.

착취사회에서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면 통치배들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형벌의 도수를 보다 높여 인민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1925년《치안유지법》에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규정하였지만《신치안유지법》에서는 사형, 무기징역과 무기금고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도수를 보다 더 높였다. 1925년《치안유지법》에서는《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협의, 선동, 재산기증 등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10년 혹은 7년이하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중에서 어느 하나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이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에게 형벌량정상에서 많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것이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둘다 인간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어 그의 정신육체를 파괴하는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다.

금고형은 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을 외부와의 련계가 완전히 차단된 비좁은 독방에 가두 고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였다.

일제는 금고형을 통하여 《사상범》들을 홀로 앉아있게 하는것이 그들의 《참회》와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설교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수감자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을 완전히 불구자로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였다.

징역형은 범죄자를 특별히 설치한 국가강제시설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육체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였다. 징역형은 범죄자에게 육체로동을 시킨다는 점에서 금고형과 구별되였다.

일제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광범히 적용하고 수감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육체로동과 노예적굴종을 강요하며 야수적인 방법으로 전향을 요구하는 등 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였다.

일제는 지난 시기 저들의 반동통치를 반대하여나서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서 금고형

과 징역형을 리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보통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산당말살을 노린《치안유지법》에서 한가지《범죄》에 대하여 두가지 형벌을 모두 예견하고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것을 규정함으로써 일본통치배들자신이《반공》광신자라는것이 여실히 증명되게 되였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통치배들은 형기의 목을 최대로 확대하였다.

《치안유지법》의 제1조에서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한 사람들에게 10년이하의 형기간을 부과한다고 규정한것과 제2조에서 해당 목적의 선동을 한 사람에게 7년이하의 형기간을 규정한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예견한 형기간의 폭이 매우 넓었다. 이것은 이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경중과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리념에 따라 두가지 형벌중에서 탄압적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는 임의의 형벌과 그 기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여지를 준것이다. 따라서 착취계급에게 충실한 사환군들로 선발된 재판관이라고 하는자들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에게 《치안유지법》이 규정한 형벌의 한도내에서 최고의 형벌을 마음대로 선언하여 탄압할수 있었다.

《치안유지법》에 규정된 금고형과 징역형은 혁명가들과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인민들을 무참히 탄압처형하기 위한 야만적인 형벌수단이였다.

그런데도 일제는 이러한 야만적인 형벌수단에도 만족하지 않고 지난 시기의 형벌을 사 형과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이라는 극형으로 교체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형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최고의 형벌이며 가장 극악한 형벌이다.

무기형은 형기가 없이 무기한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그 것은 사실상 사형에 못지 않는 형벌이다.

일제는 《신치안유지법》에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규정하여 사람들속에서 혁명 운동에 대한 공포적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조성하려 하였으며 혁명가들과 근로대중에 대한 잔인한 살인수단으로 적극 리용하였다.

《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에게 《공산당련루자》라는 감투를 뒤집어씌워 그들의 사소한 투쟁도 마음대로 탄압할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는데 있다.

생존의 권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의 권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필수적권리이다.

생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의 착취계급에게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는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 그것은 《신치안유지법》에 규정된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조항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1925년의 《치안유지법》에서는 사정을 알고 가입한자를 결사의 조직죄, 지도한 죄와 같이 취급하여 그들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이하의 자유형을 언도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신치안유지법》에서는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죄와 지도한 죄에 사형, 무기형을 들씌우는 동시에 사정을 알고 가입한 죄는 그것과 구별하여 《결사의 목

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와 같은 위치에 놓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 금고형을 부과한 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개정된 《신치안유지법》에 새롭게 규정된것은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였다.

일본통치배들이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죄명을 새롭게 조작해낸것은 《치안유지법》의 실시과정에 저들이 노린 탄압의 그물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대중운동과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단체, 인사들도 철저히 탄압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죄명이 새롭게 규정하게 된것은 《3.15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되였다.

《3.15사건》은 1928년 3월 15일 공산당원들에 대하여 진행된 대검거사건을 말한다.

일본통치배들은 《3.15사건》으로 공산당원들에 대한 대검거를 단행하였지만 검거자의 대부분은 일본공산당(혹은 공산청년동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것이 판명되였다. 당시 검사, 경찰들이 총동원되여 검거된 1 600여명의 사람들을 구류시키고 취조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약 3분의 2는 인차 석방하였다. 경찰이 그때 압수한 공산당명부에 의하면 거기에는 400여명밖에 등록되여있지 않았다고 한다.

《3.15사건》을 처리하면서 일본반동당국은 체포한 비공산당원(비동맹원)들을《국체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한자에 대하여 규정한 제2조에 근거하여 처리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체포된 《공산당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속에는 그러한 결사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제1조에서 예견한 목적수행을 위한 협의나 선동을 한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치배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반대하여나선 사람들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상 《치안유지법》의 《협의죄》를 가지고 론할 대상이 아니였다. 이 것은 날로 강화되는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일본통치배들의 횡포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 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통치배들에게는 《치안유지법》에서 나타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당적이 없어도 일본공산당과 어떠한 형태로라도 《련결》되여있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탄압의 그물안에 넣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신치안유지법》에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죄가 새롭게 첨부되였던것이다.

원래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조작할 때 일본통치배들은 이 법이 결코 위험한 법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치안유지법》에서 규정된 결사의 조직죄, 지도죄, 사정을 알고 가입한 죄, 협의죄, 선동죄 등 모든 범죄는 모두 제1조에서 규정한 해당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죄》이며 행위자가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수행했을 때만이 범죄로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치안유지법》에 규정된 범죄들은 모두 《목적죄》이기때문에 경찰, 검찰이 일방적으로 그 누구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단속하는것과 같은 일은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죄는 마치도 일본통치배들의 이 변명에 부합되는 죄인 것 같지만 깊이 파헤쳐놓고보면 그와 완전히 거리가 먼 규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 법에서는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취하는 수단과 방법여하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법의 집행자들로 하여금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의 범위

를 확장해석할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실천상에서 보면 일본의 《치안유지법》집행자들은 행위자가 결사의 목적을 긍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주관적징표는 목적수행죄의 성립에 필요없으며 해당한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것이라고 당국이 인정만 하면 그 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일제에게 있어서 아주 쓸모있는것이였다.

《신치안유지법》에서는 《국체변혁》에 대한 내용을 따로 뗴여 규정해놓았는데 그 목적수행죄에 사정을 알고 가입한 죄와 구별없이 그야말로 《동등한 대우》즉 2년이상의 유기징역과 금고형을 언도하였다. 일본반동당국은 이것을 리용하여 초보적인 인간의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임의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공산당련루자》라는 감투를 뒤집어씌워 탄압할수 있게 되였다.

《신치안유지법》은 지난 시기 《치안유지법》보다 반동적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깡그리 유린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법률제도를 보다 반동화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신치안유지법》의 반동성을 잘 알고 지난 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세계앞에 보다 낱낱이 폭로할뿐아니라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 지른 과거죄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것이다.